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23
----------	-----

2024. 11. 26.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 2024. 11. 4. 황영각 의원 등 13인

나. 상정의결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2024. 11. 26.)
“수정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황영각 의원)

매년 구에서 시행하는 강남구 구민의 상 시상식을 원칙적으로는 강남구민의 날인 10월 1일에 시상하게 되어 있음에도 매년 다른 날짜에 시상함으로써 시상시기를 정비하고 심사위원회에 강남구 의원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강남구 구민의 상 시상시기 조문 정비(안 제3조)

나. 심사위원회 강남구의회 의원 추가(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민)

가. 조문 내용별 검토

- 안 제3조는 조문을 정리하여 구민들로 하여금 규범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을 주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안 제8조제3항은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구의회사무국장을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은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과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추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이므로 구청장이 강남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을 반드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추50 판결례 참조), 조례안 제8조제3항은 구청장의 위원회위원 위촉에 관한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법한 규정이라 할 것임.
- 다만,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한 문장에 일정한 기준에 속하는 여러 사항들을 한꺼번에 나열하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항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호나 목으로 나누어 규정하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고 연결 관계도 명확해지므로 조문정리를 하

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고려해볼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강남구 부구청장,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정책홍보실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 ⑥ (생략)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구청장----- ----- ----- --- 하고, 강남구의회 추천 구의원 2인을 포함하여,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강남구 부구청장, 정책홍보실장 2. 위촉직 가.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각 시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종합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정리하여 구민들로 하여금 규범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을 주는 것과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의 구의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정한 것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으로 개

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423

제안연월일: 2024. 11. 26.

제 안 자: 행정안전위원장

1. 수정이유

구민의 상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역할과 성격의 비추어 당연직 구성의 일부를 변경함.

2. 수정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
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강남구 부구청장, 행정국장

2. 위촉직

가.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각 시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시상시기) <u>이 상은 매년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구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u></p> <p>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생략)</p> <p>③ <u>위원은 강남구 부구청장,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정책홍보실장은 당연직으로 하고</u>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제3조(시상시기) <u>이 상은 매년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구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u></p> <p>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부구청장, 정책홍보실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강남구의회 추천 구의원 2인을 포함하여, ----- ----- ----.</p>	<p>제3조(시상시기) (<u>개정안과 같음</u>)</p> <p>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p>1. <u>당연직: 강남구 부구청장, 행정국장</u></p> <p>2. <u>위촉직</u></p>

<p>④ ~ ⑥ (생략)</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u>가.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u> <u>나. 각 시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사람</u> ④ ~ ⑥ (현행과 같음)</p>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상은 매년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구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강남구 부구청장, 행정국장
2. 위촉직

가.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각 시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상시기) <u>이 상은 매년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구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u></p> <p>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p> <p>① · ② (생략)</p> <p>③ <u>위원은 강남구 부구청장,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정책홍보실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u></p> <p>④ ~ ⑥ (생략)</p>	<p>제3조(시상시기) <u>이 상은 매년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구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u></p> <p>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p>1. <u>당연직: 강남구 부구청장, 행정국장</u></p> <p>2. <u>위촉직</u></p> <p style="padding-left: 2em;">가. <u>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u></p> <p style="padding-left: 2em;">나. <u>각 시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영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3
----------	-----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 황영각 · 손민기 · 한윤수 ·
전인수 · 이동호 · 김광심 ·
김진경 · 복진경 · 이향숙 ·
윤석민 · 김영권 · 노애자 ·
강을석 의원(이상 13인)

1. 제안이유

매년 구에서 시행하는 강남구 구민의 상 시상을 원칙적으로는 강남구민의 날인 10월 1일에 시상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매년 다른 날짜에 시상함으로써 시상시기를 정비하고 심사위원회에 강남구 의원을 추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강남구 구민의 상 시상시기 조문 정비(안 제3조)
- 나. 심사위원회 강남구의회 의원 추가(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상은 매년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구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부구청장,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를 “하고, 강남구의회 추천 구의원 2인을 포함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상시기) <u>이 상은 매년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구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u></p> <p>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p> <p>① · ② (생략)</p> <p>③ 위원은 강남구 부구청장,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정책홍보실장은 당연직으로 <u>하고</u>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3조(시상시기) <u>이 상은 매년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구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u></p> <p>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하고, 강남구의회 추천 구의원 2인을 포함하여, -----.</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